

「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발 의 자: 이상호·강승수·김근한·김낙관·김민성·김영길·김영태·김원섭·
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·박교상·박세채·소진혁·신용하·안주찬·
양진오·이명희·이정희·이지연·장미경·장세구·정지원·추은희·
허민근 의원(25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상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규정(안 제2조~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11조)
- 기금관리 공무원,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~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
- 부서검토 : 예산재정과, 기업투자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5. 토 론 요 지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